"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일시: 2006년 4월 20일(목) 14:00~17:00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

주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토지공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대한국토도 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주 요 내용인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등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 으로 진행됐다. 에디터 이은숙 사진 고하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

기반시설부담금적용요율등 구체적산정기준마련

지난 4월 20일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기반시설부담 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 번 공청회는 오는 7월 12일 시행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 주요 내용을 관련 전문가와 이해 관계인 및 일반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그동안 연구를 수행해왔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주최한 이 번 공청회는 그동안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에 담을 주요 내용인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등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우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부터 살펴보자.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적정 수준의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이다. 하지만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 재정만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적시에 적량을 공급하기가 어렵다.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재에 대해서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서 혜택만을 누리려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발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이 개발비용인 기반시설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지난8 ·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대해 부과하되,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 사업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했다.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 처리시설등 7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사용되며, 부담률도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의 100분의 20으로하되, 지자체의 장이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흔히 개발부담금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다르다. 개발부담금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 익(지가 상승차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마련 된 제도이다. 때문에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는 건축 행위에 대해 기반시 설 설치비용을 원인자가 일부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는 법의 도입 배경부터가다르다.

이날 공청회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 (안)에 대해 4월 21일부터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마무리됐다. ↔